2020년 귀속 소득ㆍ세액공제증명서류: 기본내역 [건강보험료]

(조회기간 : 2020년 01 ~ 12월)

■ 가입자 인적사항

성 명	주 민 등 록 번 호		
권오범	790820-*****		

■ 건강보험료(직장가입자) 내역

(단위:원)

의벼	보수월액(고지금액)	소득월액(납부금액)		
월별	건강보험료①	장기요양보험료②	건강보험료③	장기요양보험료④	
01월	115,560	11,840	0	0	
02월	115,560	11,840	0	0	
03월	115,560	11,840	0	0	
04월	131,810	13,360	0	0	
05월	131,730	13,320	0	0	
06월	131,730	13,320	0	0	
07월	131,730	13,320	0	0	
08월	131,730	13,320	0	0	
09월	131,730	13,320	0	0	
10월	131,730	13,320	0	0	
11월	131,730	13,320	0	0	
12월	131,730	13,320	0	0	
연말정산	0	0			
합계	1,532,330	155,440	0	0	
총합계				1,687,770	

1. 보수월액 보험료 :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고지한 금액이며, 급여에서 원천공제된 금액과 다른 경우 회사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 소득공제대상금액은 실제 급여에서 원천공제된 금액입니다. (둘 이상의 회사에 근무한 경우에는 합산한 보험료가 제공됩니다.)

-1-

2. 소득월액 보험료 : 연간 납부한 금액이 제공됩니다.



- 본 증명서류는 『소득세법』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·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.
-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.

2020년 귀속 소득 · 세액공제증명서류 [국민연금보험료]

(조회기간 : 2020년 01 ~ 12월)

■ 가입자 인적사항

성 명	주 민 등 록 번 호		
권오범	790820-*****		

■ 국민연금보험료 내역 (단위:원)

월별	직장가입자 고지금액	지역가입자 등 납부금액
01월	147,640	0
02월	147,640	0
03월	147,640	0
04월	147,640	0
05월	147,640	0
06월	147,640	0
07월	161,820	0
08월	161,820	0
09월	161,820	0
10월	161,820	0
11월	161,820	0
12월	161,820	0
직장가입자 소급고지금액	0	
추납보접	험료 납부금액	0
실업크리	0	
합계	1,856,760	0
	총합계	1,856,760

- 1. 직장가입자 고지금액: 국민연금공단이 고지한 금액이며, 실제 급여에서 원천공제된 금액과 다른 경우 회사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 소득공제대상금액은 실제 급여에서 원천공제된 금액입니다. (둘 이상의 회사에 근무한 경우 합산한 보험료가 제공됩니다.)
- ※ 두루누리 연금보험료 지원 근로자는 해당 지원금이 공제된 금액으로 월별 고지금액이 제공되며, 지원금 공제 시점에 따라 월별 고지금액이 마이너스(-) 금액이 될 수 있습니다.
- 2. 지역가입자·추납보험료·실업크레딧 납부금액은 연간 납부한 금액이 제공됩니다.



- 본 증명서류는 『소득세법』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·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.
-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.

(조회기간 : 2020년 01 ~ 12월)

■ 계약자 인적사항

성 명	주 민 등 록 번 호
권오범	790820-****

■ 보장성보험(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)납입내역

(단위:원)

	상 호		보험종-	류			
종류	사업자번	호	증권번호		주피보험	자	납입금액 계
	종피보험자1((수익자)	종피보험자2(종피보험자2(수익자)		수익자)	
	농협생명보험 주식회사		(무)베스트종신공제 1종 (전통				
보장성	104-86-39	723	000519**	***	790820-*****	권오범	1,445,880
	주식회사 케이ㅂ	손해보험	(무)희망플러스자녀보험II				
보장성	202-81-48	3370	201527**	***	150131-*****	권지원	541,577
	흥국화재해상보	.험 (주)	eYou다이렉트	_업무용			
보장성	102-81-07	'837	620432**	***	431228-*****	권영철	1,474,400
	흥국화재해상보험 (주)		eYou인터넷 개인용	용자동차보험			
보장성	102-81-07	837	620457****		790820-*****	권오범	346,840
	디비손해보험	주식회사	다이렉트운전자보험1211				
보장성	201-81-45	5593	238020****		790820-*****	권오범	378,960

1. 공제 대상: 근로소득자가 소득세법 제50조 제1항에 따른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과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보험 중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보험의 보험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보험료(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의 주택 임차보증금 반환 보증보험료 포함)

2. 공제 한도 : 100만원



- 본 증명서류는 『소득세법』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·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.
-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.

(조회기간 : 2020년 01 ~ 12월)

■ 계약자 인적사항

성 명	주 민 등 록 번 호
권오범	790820-*****

■ 보장성보험(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)납입내역

(단위:원)

	상 호		보험종	류			
종류	사업자번호		증권번호		주피보험자		납입금액 계
	종피보험자1(수익자)		종피보험자2(수익자)		종피보험자3(수익자)		
	현대해상화재보험 (주)		무배당굿앤굿어린이CI보험 (Hi160				
보장성	102-81-32	2035	L01619****		170213-*****	권지민	398,760
	790810-*****	송경실					
	우정사업본부		재해안심단	재해안심만기			
보장성	101-83-02925		080683****		790820-****	권오범	242,400
	인별합계금액						4,828,817

1. 공제 대상: 근로소득자가 소득세법 제50조 제1항에 따른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과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보험 중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보험의 보험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보험료(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의 주택 임차보증금 반환 보증보험료 포함)

2. 공제 한도 : 100만원



- 본 증명서류는 『소득세법』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·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.
-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.

(조회기간 : 2020년 01 ~ 12월)

■ 계약자 인적사항

성 명	주 민 등 록 번 호
송경실	790810-*****

■ 보장성보험(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)납입내역

(단위:원)

	상 호		보험종류				
종류	사업자번	호	증권번호		주피보험자		납입금액 계
	종피보험자1(수익자)		종피보험자2(수익자)		종피보험자3(수익자)	
	동양생명보험 (주)		(무)수호천사행복	플랜Ⅱ보험			
보장성	202-81-38	3251	103782**	***	790810-*****	송경실	672,750
	디비손해보험:	주식회사	내생애든든종합	보험1401			
보장성	201-81-45	5593	96V140**	***	790810-*****	송경실	840,000
	라이나생명보	보험(주)	무배당라이나OK암. 2	보험(갱신형)-			
보장성	104-81-85673		25198C**	***	790810-*****	송경실	347,400
	디비손해보험 주식회사		이지스종합보험0704				
보장성	201-81-45	5593	258070****		790810-*****	송경실	1,030,800
	인별합계금액		2,890,		2,890,950		

1. 공제 대상: 근로소득자가 소득세법 제50조 제1항에 따른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과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보험 중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보험의 보험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보험료(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의 주택 임차보증금 반환 보증보험료 포함)

2. 공제 한도 : 100만원



- 본 증명서류는 『소득세법』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·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.
-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.

(조회기간 : 2020년 01 ~ 12월)

■ 계약자 인적사항

성 명	주 민 등 록 번 호
권영철	431228-*****

■ 보장성보험(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)납입내역

(단위:원)

	상 호		보험종-	류				
종류	사업자번	호	증권번:	증권번호		주피보험자		
	종피보험자1(수익자) 종피보험자2(수익자)		종피보험자1(수익자)		(수익자)	종피보험자3(수익자)	
	우정사업본부		재해안심단	<u></u> 가기				
보장성	101-83-02	925	080693**	***	431228-*****	권영철	222,200	
	우정사업	본부	재해안심순수					
보장성	101-83-02	925	409478**	***	811020-*****	권혜윤	61,600	
	우정사업본부		재해안심순수					
보장성	101-83-02925		409481****		771020-*****	권혜경	61,600	
	인별합계금액						345,400	

1. 공제 대상: 근로소득자가 소득세법 제50조 제1항에 따른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과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보험 중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보험의 보험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보험료(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의 주택 임차보증금 반환 보증보험료 포함)

2. 공제 한도 : 100만원



- 본 증명서류는 『소득세법』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·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.
-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.

(조회기간 : 2020년 01 ~ 12월)

■ 계약자 인적사항

성 명	주 민 등 록 번 호
한재덕	541211-*****

■ 보장성보험(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)납입내역

(단위:원)

	상 호		보험종-	류			
종류	사업자반	호	증권번호		주피보험자		납입금액 계
	종피보험자1(종피보험자1(수익자)		종피보험자2(수익자)		수익자)	
	삼성생명보험 (주)		무)퍼스트클래스종신				
보장성	104-81-26688		000017**	***	541211-*****	한재덕	926,400
	교보생명보험 (주)		무배당교보행복한견	E비보험(기본			
보장성	102-81-11	.097	211092****		541211-*****	한재덕	350,400
	우정사업본부		올커버암치료				
보장성	101-83-02	925	071254**	***	541211-*****	한재덕	403,200
	우정사업본부		재해안심단	<u></u> 만기			
보장성	101-83-02925		071255****		541211-*****	한재덕	165,600
	우정사업년	본부	종합건강				
보장성	101-83-02	925	071254****		541211-*****	한재덕	762,000

1. 공제 대상: 근로소득자가 소득세법 제50조 제1항에 따른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과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보험 중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보험의 보험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보험료(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의 주택 임차보증금 반환 보증보험료 포함)

2. 공제 한도 : 100만원



- 본 증명서류는 『소득세법』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·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.
-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.

(조회기간 : 2020년 01 ~ 12월)

■ 계약자 인적사항

성 명	주 민 등 록 번 호
한재덕	541211-*****

■ 보장성보험(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)납입내역

(단위:원)

	상 호	보험종류		
종류	사업자번호	증권번호	주피보험자	납입금액 계
	종피보험자1(수익자)	종피보험자2(수익자)	종피보험자3(수익자)	
	인별합계금액			2,607,600

1. 공제 대상: 근로소득자가 소득세법 제50조 제1항에 따른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과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보험 중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보험의 보험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보험료(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의 주택 임차보증금 반환 보증보험료 포함)

2. 공제 한도 : 100만원



- 본 증명서류는 『소득세법』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·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.
-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.

(조회기간 : 2020년 01 ~ 12월)

■ 환자 인적사항

성 명	주 민 등 록 번 호
권오범	790820-*****

■ 의료비 지출내역 (단위:원)

사 업 자 번 호	상 호	종 류	지출금액 계
6-83-01*	무주****	일반	43,700
2-90-46*	연세****	일반	4,800
5-90-00*	민속****	일반	11,200
8-61-00*	엠케****	일반	16,900
의료비 인별합계금액			76,600
안경구입비 인별합계금액			0
산후조리원 인별합계금액			0
인별합계금액			76,600

- 1. 공제 대상 : 근로자 본인 및 부양가족(나이 및 소득의 제한을 받지 않음)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 중 총급여액의 3%를 초과한 금액
 - ※ 미용 목적 성형(교정) 비용 및 건강기능식품(보약) 구입비용,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한 '본인부담금상한제 사후 환급금' 및 출산 전 진료비원지원금에 해당하는 의료비, 사내근로복지기금 지원 의료비 등은 세액공제대상이 아님

-9-

- 2. 공제 한도 : 본인·장애인·65세 이상 자·건강보험 산정특례자·난임시술비(한도 없음) 그 외 부양가족(700만원) ※ 시력보정용 안경(콘택트렌즈) 구입비는 1인당 연 50만원 이내,
 - 2019년 이후 지출한 산후조리 비용은 출산 1회당 200만원 이내 (총급여 7천만원 이하의 근로자만 해당)



- 본 증명서류는 『소득세법』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·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.
-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.

(조회기간 : 2020년 01 ~ 12월)

■ 환자 인적사항

성 명	주 민 등 록 번 호
송경실	790810-*****

■ 의료비 지출내역 (단위:원)

사 업 자 번 호	상 호	종 류	지출금액 계
2-96-06*	덴타****	일반	769,000
6-83-01*	무주****	일반	8,600
4-26-38*	탄방****	일반	3,900
4-91-10*	대전****	일반	119,000
5-98-00*	미즈****	일반	78,000
1-98-70*	김남****	일반	107,400
8-61-00*	엠케****	일반	5,500
의료비 인별합계금액			1,091,400
안경구입비 인별합계금액			0
산후조리원 인별합계금액			0
인별합계금액			1,091,400

- 1. 공제 대상 : 근로자 본인 및 부양가족(나이 및 소득의 제한을 받지 않음)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 중 총급여액의 3%를 초과한 금액
 - ※ 미용 목적 성형(교정) 비용 및 건강기능식품(보약) 구입비용,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한 '본인부담금상한제 사후 환급금' 및 출산 전 진료비원지원금에 해당하는 의료비, 사내근로복지기금 지원 의료비 등은 세액공제대상이 아님

-10-

- 2. 공제 한도 : 본인·장애인·65세 이상 자·건강보험 산정특례자·난임시술비(한도 없음) 그 외 부양가족(700만원) ※ 시력보정용 안경(콘택트렌즈) 구입비는 1인당 연 50만원 이내,
 - 2019년 이후 지출한 산후조리 비용은 출산 1회당 200만원 이내 (총급여 7천만원 이하의 근로자만 해당)



- 본 증명서류는 『소득세법』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·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.
-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.

(조회기간 : 2020년 01 ~ 12월)

■ 환자 인적사항

성 명	주 민 등 록 번 호
권영철	431228-*****

■ 의료비 지출내역 (단위:원)

사 업 자 번 호	상 호	종 류	지출금액 계
2-96-08*	수연****	일반	17,500
5-21-28*	다정****	일반	3,200
8-07-75*	장약****	일반	2,000
5-82-05*	(<u>○</u> ****	일반	1,470,720
6-90-06*	임형****	일반	1,600
1-01-86*	보건****	일반	3,000
2-90-88*	무주****	일반	23,300
6-05-24*	무주****	일반	304,500
8-06-92*	녹십****	일반	8,800
8-90-31*	무주****	일반	34,400
4-90-07*	이주****	일반	36,500
2-04-98*	소화****	일반	1,600
1-24-00*	엔젤****	일반	1,000
5-90-00*	민속****	일반	121,500

- 1. 공제 대상 : 근로자 본인 및 부양가족(나이 및 소득의 제한을 받지 않음)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 중 총급여액의 3%를 초과한 금액
 - ※ 미용 목적 성형(교정) 비용 및 건강기능식품(보약) 구입비용,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한 '본인부담금상한제 사후 환급금' 및 출산 전 진료비원지원금에 해당하는 의료비, 사내근로복지기금 지원 의료비 등은 세액공제대상이 아님

-11-

- 2. 공제 한도 : 본인·장애인·65세 이상 자·건강보험 산정특례자·난임시술비(한도 없음) 그 외 부양가족(700만원) ※ 시력보정용 안경(콘택트렌즈) 구입비는 1인당 연 50만원 이내,
 - 2019년 이후 지출한 산후조리 비용은 출산 1회당 200만원 이내 (총급여 7천만원 이하의 근로자만 해당)



- 본 증명서류는 『소득세법』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·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.
-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.

(조회기간 : 2020년 01 ~ 12월)

■ 환자 인적사항

성 명	주 민 등 록 번 호
권영철	431228-*****

■ 의료비 지출내역 (단위:원)

사 업 자 번 호	상 호	종 류	지출금액 계
0-16-00*	정문****	일반	26,700
의료비 인별합계금액			2,056,320
안경구입비 인별합계금액			0
산후조리원 인별합계금액			0
인별합계금액			2,056,320

- 1. 공제 대상 : 근로자 본인 및 부양가족(나이 및 소득의 제한을 받지 않음)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 중 총급여액의 3%를 초과한 금액
 - ※ 미용 목적 성형(교정) 비용 및 건강기능식품(보약) 구입비용,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한 '본인부담금상한제 사후 환급금' 및 출산 전 진료비원지원금에 해당하는 의료비, 사내근로복지기금 지원 의료비 등은 세액공제대상이 아님

-12-

- 2. 공제 한도 : 본인·장애인·65세 이상 자·건강보험 산정특례자·난임시술비(한도 없음) 그 외 부양가족(700만원) ※ 시력보정용 안경(콘택트렌즈) 구입비는 1인당 연 50만원 이내,
 - 2019년 이후 지출한 산후조리 비용은 출산 1회당 200만원 이내 (총급여 7천만원 이하의 근로자만 해당)



- 본 증명서류는 『소득세법』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·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.
-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.

(조회기간 : 2020년 01 ~ 12월)

■ 환자 인적사항

성 명	주 민 등 록 번 호
한재덕	541211-*****

■ 의료비 지출내역 (단위:원)

사 업 자 번 호	상 호	종 류	지출금액 계
5-82-08*	충남****	일반	38,800
8-04-61*	마더****	일반	4,400
8-82-03*	전북****	일반	23,500
2-90-64*	한양****	일반	117,500
2-06-65*	대웅****	일반	1,000
2-35-51*	건강****	일반	66,900
2-90-86*	양지****	일반	8,600
6-83-01*	무주****	일반	84,000
5-82-05*	(<u>O</u> ****	일반	1,117,320
2-96-07*	전주****	일반	30,000
8-82-08*	호성****	일반	95,340
2-90-88*	무주****	일반	18,600
6-05-24*	무주****	일반	94,000
2-91-81*	강한****	일반	76,500

- 1. 공제 대상 : 근로자 본인 및 부양가족(나이 및 소득의 제한을 받지 않음)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 중 총급여액의 3%를 초과한 금액
 - ※ 미용 목적 성형(교정) 비용 및 건강기능식품(보약) 구입비용,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한 '본인부담금상한제 사후 환급금' 및 출산 전 진료비원지원금에 해당하는 의료비, 사내근로복지기금 지원 의료비 등은 세액공제대상이 아님

-13-

- 2. 공제 한도 : 본인·장애인·65세 이상 자·건강보험 산정특례자·난임시술비(한도 없음) 그 외 부양가족(700만원) ※ 시력보정용 안경(콘택트렌즈) 구입비는 1인당 연 50만원 이내,
 - 2019년 이후 지출한 산후조리 비용은 출산 1회당 200만원 이내 (총급여 7천만원 이하의 근로자만 해당)



- 본 증명서류는 『소득세법』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·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.
-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.

(조회기간 : 2020년 01 ~ 12월)

■ 환자 인적사항

성 명	주 민 등 록 번 호
한재덕	541211-*****

■ 의료비 지출내역 (단위:원)

사 업 자 번 호	상 호	종 류	지출금액 계
2-91-49*	조은****	일반	67,400
2-91-76*	위사****	일반	1,600
8-06-92*	녹십****	일반	4,300
8-90-31*	무주****	일반	16,000
5-90-00*	민속****	일반	137,600
0-16-00*	드림****	일반	15,700
0-16-00*	정문****	일반	12,500
8-31-00*	건강***** 일반		64,780
의료비 인별합계금액			2,096,340
안경구입비 인별합계금액			0
산후조리원 인별합계금액			0
인별합계금액			2,096,340

- 1. 공제 대상 : 근로자 본인 및 부양가족(나이 및 소득의 제한을 받지 않음)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 중 총급여액의 3%를 초과한 금액
 - ※ 미용 목적 성형(교정) 비용 및 건강기능식품(보약) 구입비용,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한 '본인부담금상한제 사후 환급금' 및 출산 전 진료비원지원금에 해당하는 의료비, 사내근로복지기금 지원 의료비 등은 세액공제대상이 아님

-14-

- 2. 공제 한도 : 본인·장애인·65세 이상 자·건강보험 산정특례자·난임시술비(한도 없음) 그 외 부양가족(700만원) ※ 시력보정용 안경(콘택트렌즈) 구입비는 1인당 연 50만원 이내,
 - 2019년 이후 지출한 산후조리 비용은 출산 1회당 200만원 이내 (총급여 7천만원 이하의 근로자만 해당)



- 본 증명서류는 『소득세법』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·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.
-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.

(조회기간 : 2020년 01 ~ 12월)

■ 환자 인적사항

성 명	주 민 등 록 번 호	
권지원	150131-*****	

■ 의료비 지출내역 (단위:원)

사 업 자 번 호	상 호	종 류	지출금액 계
5-27-20*	그린****	일반	6,800
6-83-01*	무주****	일반	3,500
4-82-11*	원광****	일반	19,100
1-01-86*	보건****	일반	2,200
4-28-24*	도솔****	일반	4,800
4-28-13*	예쁜****	일반	7,000
5-82-14*	의료****	일반	11,500
3-94-00*	코젤****	일반	7,900
4-05-00*	메디****	일반	2,000
1-44-00*	엠케****	일반	554,800
0-66-00*	일편****	일반	2,800
2-97-00*	아이****	일반	4,400
8-96-36*	관저****	일반	7,100
4-29-67*	유성****	일반	8,300

- 1. 공제 대상 : 근로자 본인 및 부양가족(나이 및 소득의 제한을 받지 않음)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 중 총급여액의 3%를 초과한 금액
 - ※ 미용 목적 성형(교정) 비용 및 건강기능식품(보약) 구입비용,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한 '본인부담금상한제 사후 환급금' 및 출산 전 진료비원지원금에 해당하는 의료비, 사내근로복지기금 지원 의료비 등은 세액공제대상이 아님

-15-

- 2. 공제 한도 : 본인·장애인·65세 이상 자·건강보험 산정특례자·난임시술비(한도 없음) 그 외 부양가족(700만원) ※ 시력보정용 안경(콘택트렌즈) 구입비는 1인당 연 50만원 이내,
 - 2019년 이후 지출한 산후조리 비용은 출산 1회당 200만원 이내 (총급여 7천만원 이하의 근로자만 해당)



- 본 증명서류는 『소득세법』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·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.
-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.

(조회기간 : 2020년 01 ~ 12월)

■ 환자 인적사항

성 명	주 민 등 록 번 호	
권지원	150131-*****	

■ 의료비 지출내역 (단위:원)

사 업 자 번 호	상 호 종 류 지출금		지출금액 계
8-61-00*	엠케****	일반 7,60	
의료비 인별합계금액			649,800
안경구입비 인별합계금액			0
산후조리원 인별합계금액			0
인별합계금액			649,800

- 1. 공제 대상 : 근로자 본인 및 부양가족(나이 및 소득의 제한을 받지 않음)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 중 총급여액의 3%를 초과한 금액
 - ※ 미용 목적 성형(교정) 비용 및 건강기능식품(보약) 구입비용,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한 '본인부담금상한제 사후 환급금' 및 출산 전 진료비원지원금에 해당하는 의료비, 사내근로복지기금 지원 의료비 등은 세액공제대상이 아님

-16-

- 2. 공제 한도 : 본인·장애인·65세 이상 자·건강보험 산정특례자·난임시술비(한도 없음) 그 외 부양가족(700만원) ※ 시력보정용 안경(콘택트렌즈) 구입비는 1인당 연 50만원 이내,
 - 2019년 이후 지출한 산후조리 비용은 출산 1회당 200만원 이내 (총급여 7천만원 이하의 근로자만 해당)



- 본 증명서류는 『소득세법』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·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.
-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.

(조회기간 : 2020년 01 ~ 12월)

■ 환자 인적사항

성 명	주 민 등 록 번 호
권지민	170213-*****

■ 의료비 지출내역 (단위:원)

사 업 자 번 호	상 호	종 류	지출금액 계	
6-83-01*	무주****	일반	3,500	
1-01-86*	보건****	일반	1,900	
3-94-00*	코젤****	일반	4,600	
4-05-00*	메디****	일반	1,700	
1-44-00*	엠케****	일반	220,800	
0-66-00*	일편****	일반	3,100	
2-97-00*	아이****	일반	4,400	
4-29-67*	유성****	일반 1,		
8-61-00*	엠케****	엠케***** 일반 4,		
의료비 인별합계금액			245,600	
안경구입비 인별합계금액			0	
산후조리원 인별합계금액			0	
인별합계금액			245,600	

- 1. 공제 대상 : 근로자 본인 및 부양가족(나이 및 소득의 제한을 받지 않음)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 중 총급여액의 3%를 초과한 금액
 - ※ 미용 목적 성형(교정) 비용 및 건강기능식품(보약) 구입비용,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한 '본인부담금상한제 사후 환급금' 및 출산 전 진료비원지원금에 해당하는 의료비, 사내근로복지기금 지원 의료비 등은 세액공제대상이 아님

-17-

- 2. 공제 한도 : 본인·장애인·65세 이상 자·건강보험 산정특례자·난임시술비(한도 없음) 그 외 부양가족(700만원) ※ 시력보정용 안경(콘택트렌즈) 구입비는 1인당 연 50만원 이내,
 - 2019년 이후 지출한 산후조리 비용은 출산 1회당 200만원 이내 (총급여 7천만원 이하의 근로자만 해당)



- 본 증명서류는 『소득세법』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·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.
-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.

(조회기간 : 2020년 01 ~ 12월)

■ 사용자 인적사항

성 명	주 민 등 록 번 호	
권오범	790820-*****	

■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집계

구분	일반	전통시장	대중교통	도서공연등	합계금액
2020년 합계	14,973,699	476,500	24,300	17,280	15,491,779
3월분	1,185,718	20,000	0	0	1,205,718
4~7월분	4,154,135	216,000	0	17,280	4,387,415
그외 (1~2월,8~12월분)	9,633,846	240,500	24,300	0	9,898,646

■ 신용카드 등 사용내역 (단위:원)

			01월	02월	03월	04월		
구분	상 호 (사 업 자 번 호)	종류	05월	06월	07월	08월	공제대상금액	
	(1212)		09월	10월	11월	12월		
	롯데카드 주식회사 (120-81-54231)		0	0	0	41,210		
신용카드		일반	0	0	0	0	41,210	
			0	0	0	0		
			1,209,996	411,224	596,948	442,590		
신용카드	신한카드 주식회사 (202-81-48079)	카드 주식회사 2-81-48079) 일반	677,240	509,740	266,150	449,930	7,949,753	
			677,920	719,955	1,372,930	615,130		
	드 신한카드 주식회사 (202-81-48079)			0	0	0	70,000	
신용카드		전통시장	0	0	53,000	0	148,000	
			0	25,000	0	0		

- 1. 공제대상: 근로제공 기간 동안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합계액
- 2. 사용처 구분 : 일반사용분, 전통시장사용분, 대중교통이용분, 도서공연등 사용분으로 구분 (중고자동차 구매금액의 10%는 일반사용금액에 포함되며 중고자동차 판매 사업장이 전통시장내에 있는 경우 전통시장 사용분에 포함)
- ※ 실제 사용하신 사용내역과 간소화자료가 다른 경우 신용카드 사업자 등에게 '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'를 재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.



- 본 증명서류는 『소득세법』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·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.
-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.

(조회기간 : 2020년 01 ~ 12월)

■ 사용자 인적사항

성 명	주 민 등 록 번 호
권오범	790820-*****

■ 신용카드 등 사용내역

			01월	02월	03월	04월					
구분	상 호 (사 업 자 번 호)	종류	05월	06월	07월	08월	공제대상금액				
	,,,,,,,,,,,,,,,,,,,,,,,,,,,,,,,,,,,,,,,		09월	10월	11월	12월					
			7,250	0	0	0					
신용카드	신한카드 주식회사 (202-81-48079)	대중교통	0	0	0	0	12,800				
			0	0	5,550	0					
			0	0	0	17,280					
신용카드	신한카드 주식회사 (202-81-48079)	도서공연등	0	0	0	0	17,280				
	,						0	0	0	0	
			360,160	353,525	570,770	458,190					
신용카드	하나카드 주식회사 (104-86-56659)	일반	955,970	448,935	334,610	341,630	6,105,040				
			594,990	555,370	428,400	702,490					
			0	0	20,000	93,000					
신용카드	하나카드 주식회사 (104-86-56659)	전통시장	0	0	0	12,000	290,500				
			0	22,000	51,500	92,000					
			0	11,500	0	0					
신용카드	하나카드 주식회사 (104-86-56659)	대중교통	0	0	0	0	11,500				
			0	0	0	0					

- 1. 공제대상 : 근로제공 기간 동안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합계액
- 2. 사용처 구분 : 일반사용분, 전통시장사용분, 대중교통이용분, 도서공연등 사용분으로 구분 (중고자동차 구매금액의 10%는 일반사용금액에 포함되며 중고자동차 판매 사업장이 전통시장내에 있는 경우 전통시장 사용분에 포함)
- ※ 실제 사용하신 사용내역과 간소화자료가 다른 경우 신용카드 사업자 등에게 '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'를 재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.



- 본 증명서류는 『소득세법』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·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.
-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.

(조회기간 : 2020년 01 ~ 12월)

■ 사용자 인적사항

성 명	주 민 등 록 번 호
권오범	790820-*****

■ 신용카드 등 사용내역

			01월	02월	03월	04월			
구분	상 호 (사 업 자 번 호)	종류	05월	06월	07월	08월	공제대상금액		
	(, _ , _ ,		09월	10월	11월	12월			
	(주) KB국민카드 (101-86-61717)				683,256	156,940	18,000	19,500	
신용카드		주) KB국민카드 101-86-61717) 일반	0	0	0	0	877,696		
			0	0	0	0			
	·드 (주) KB국민카드 (101-86-61717)				38,000	0	0	0	
신용카드		(주) KB국민카드 (101-86-61717) 전통시장	0	0	0	0	38,000		
			0	0	0	0			

1. 공제대상 : 근로제공 기간 동안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합계액

2. 사용처 구분: 일반사용분, 전통시장사용분, 대중교통이용분, 도서공연등 사용분으로 구분 (중고자동차 구매금액의 10%는 일반사용금액에 포함되며 중고자동차 판매 사업장이 전통시장내에 있는 경우 전통시장 사용분에 포함) ※ 실제 사용하신 사용내역과 간소화자료가 다른 경우 신용카드 사업자 등에게 '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'를 재발급

받으시기 바랍니다.



- 본 증명서류는 『소득세법』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·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.
-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.

(조회기간 : 2020년 01 ~ 12월)

■ 사용자 인적사항

성 명	주 민 등 록 번 호
송경실	790810-*****

■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집계

구분	일반	전통시장	대중교통	도서공연등	합계금액
2020년 합계	6,468,373	36,000	950	0	6,505,323
3월분	431,970	0	0	0	431,970
4~7월분	3,220,503	0	0	0	3,220,503
그외 (1~2월,8~12월분)	2,815,900	36,000	950	0	2,852,850

■ 신용카드 등 사용내역 (단위:원)

			01월	02월	03월	04월	
구분	상 호 (사 업 자 번 호)	종류	05월	06월	07월	08월	공제대상금액
	· · - · - /		09월	10월	11월	12월	
			457,110	364,290	431,970	969,510	
신용카드	신한카드 주식회사 (202-81-48079)	일반	893,860	894,728	462,405	405,630	6,468,373
			559,650	272,540	309,100	447,580	
			0	0	0	0	
신용카드	신한카드 주식회사 (202-81-48079)	신한카드 주식회사 (202-81-48079) 전통시장	0	0	0	36,000	36,000
			0	0	0	0	
	카드 신한카드 주식회사 (202-81-48079)		0	950	0	0	
신용카드		대중교통	0	0	0	0	950
			0	0	0	0	

- 1. 공제대상: 근로제공 기간 동안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합계액
- 2. 사용처 구분 : 일반사용분, 전통시장사용분, 대중교통이용분, 도서공연등 사용분으로 구분 (중고자동차 구매금액의 10%는 일반사용금액에 포함되며 중고자동차 판매 사업장이 전통시장내에 있는 경우 전통시장 사용분에 포함)
- ※ 실제 사용하신 사용내역과 간소화자료가 다른 경우 신용카드 사업자 등에게 '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'를 재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.



- 본 증명서류는 『소득세법』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·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.
-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.

(조회기간 : 2020년 01 ~ 12월)

■ 사용자 인적사항

성 명	주 민 등 록 번 호
권영철	431228-*****

■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집계

구분	일반	전통시장	대중교통	도서공연등	합계금액
2020년 합계	15,823,281	20,000	33,600	0	15,876,881
3월분	994,310	0	0	0	994,310
4~7월분	5,342,986	20,000	33,600	0	5,396,586
그외 (1~2월,8~12월분)	9,485,985	0	0	0	9,485,985

■ 신용카드 등 사용내역 (단위:원)

			01월	02월	03월	04월		
구분	상 호 (사 업 자 번 호)	종류	05월	06월	07월	08월	공제대상금액	
	· · - · - /		09월	10월	11월	12월		
			531,420	2,967,340	688,360	1,038,685		
신용카드	농협은행 주식회사 (104-86-39742)	농협은행 주식회사 (104-86-39742)	일반	999,991	1,322,260	1,153,390	936,210	13,148,476
			1,999,570	214,650	863,200	433,400		
		농협은행 주식회사 (104-86-39742) 전통시장	0	0	0	0		
신용카드	농협은행 주식회사 (104-86-39742)		0	20,000	0	0	20,000	
			0	0	0	0		
	공카드 농협은행 주식회사 (104-86-39742)		0	0	0	0		
신용카드		대중교통	0	16,800	0	0	16,800	
			0	0	0	0		

- 1. 공제대상: 근로제공 기간 동안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합계액
- 2. 사용처 구분 : 일반사용분, 전통시장사용분, 대중교통이용분, 도서공연등 사용분으로 구분 (중고자동차 구매금액의 10%는 일반사용금액에 포함되며 중고자동차 판매 사업장이 전통시장내에 있는 경우 전통시장 사용분에 포함)
- ※ 실제 사용하신 사용내역과 간소화자료가 다른 경우 신용카드 사업자 등에게 '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'를 재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.

일련번호: 20210601-09877020



- 본 증명서류는 『소득세법』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·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.
-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.

-22-

(조회기간 : 2020년 01 ~ 12월)

■ 사용자 인적사항

성 명	주 민 등 록 번 호
권영철	431228-*****

■ 신용카드 등 사용내역

			01월	02월	03월	04월	
구분	상 호 (사 업 자 번 호)	종류	05월	06월	07월	08월	공제대상금액
	(, _ , _ ,		09월	10월	11월	12월	
			291,660	41,050	305,950	183,060	
신용카드	하나카드 주식회사 (104-86-56659)	일반	295,525	191,675	158,400	165,665	2,674,805
			332,020	157,630	276,420	275,750	
	하나카드 주식회사 (104-86-56659)		0	0	0	0	
신용카드		하나카드 주식회사 (104-86-56659) 대중교통	대중교통	0	16,800	0	0
			0	0	0	0	

1. 공제대상 : 근로제공 기간 동안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합계액

2. 사용처 구분: 일반사용분, 전통시장사용분, 대중교통이용분, 도서공연등 사용분으로 구분 (중고자동차 구매금액의 10%는 일반사용금액에 포함되며 중고자동차 판매 사업장이 전통시장내에 있는 경우 전통시장 사용분에 포함) ※ 실제 사용하신 사용내역과 간소화자료가 다른 경우 신용카드 사업자 등에게 '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'를 재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.



- 본 증명서류는 『소득세법』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·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.
-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.

(조회기간 : 2020년 01 ~ 12월)

■ 사용자 인적사항

성 명	주 민 등 록 번 호
권영철	431228-*****

■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집계

구분	일반	전통시장	대중교통	도서공연등	합계금액
2020년 합계	2,163,660	0	27,900	0	2,191,560
3월분	487,050	0	0	0	487,050
4~7월분	306,170	0	18,600	0	324,770
그외 (1~2월,8~12월분)	1,370,440	0	9,300	0	1,379,740

■ 신용카드 등 사용내역 (단위:원)

			01월	02월	03월	04월		
구분	상 호 (사 업 자 번 호)	종류	05월	06월	07월	08월	공제대상금액	
	(1212)		09월	10월	11월	12월		
			0	0	0	0		
직불카드 등	직불카드 등 나이스정보통신(주) (220-81-15770)	일반	0	0	0	0	579,780	
			225,370	79,000	179,410	96,000		
			535,980	246,480	487,050	138,410		
직불카드 등	농협은행 주식회사 (104-86-39742)	일반	42,400	47,950	77,410	4,500	1,583,880	
			3,700	0	0	0		
				0	0	0	0	
직불카드 등 <u>농협은행</u> 주식회사 (104-86-39742)	대중교통	18,600	0	0	0	27,900		
			9,300	0	0	0		

- 1. 공제대상: 근로제공 기간 동안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합계액
- 2. 사용처 구분 : 일반사용분, 전통시장사용분, 대중교통이용분, 도서공연등 사용분으로 구분 (중고자동차 구매금액의 10%는 일반사용금액에 포함되며 중고자동차 판매 사업장이 전통시장내에 있는 경우 전통시장 사용분에 포함)
- ※ 실제 사용하신 사용내역과 간소화자료가 다른 경우 신용카드 사업자 등에게 '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'를 재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.



- 본 증명서류는 『소득세법』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·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.
-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.

2020년 귀속 소득·세액공제증명서류: 집계(월별,사용처별)내역 [현금영수증]

(조회기간 : 2020년 01 ~ 12월)

■ 사용자 인적사항

성 명	주 민 등 록 번 호
송경실	790810-*****

■ 현금영수증 사용금액 집계

구분	일반	전통시장	대중교통	도서공연등	합계금액
2020년 합계	130,460	0	0	0	130,460
3월분	0	0	0	0	0
4~7월분	0	0	0	0	0
그외 (1~2월,8~12월분)	130,460	0	0	0	130,460

■ 현금영수증 사용내역 (단위:원)

		01월	02월	03월	04월	
구분	종류	05월	06월	07월	08월	공제대상금액
		09월	10월	11월	12월	
		0	0	0	0	
현금영수증	일반거래	0	0	0	0	130,460
		130,460	0	0	0	

- 1. 공제대상 : 근로제공 기간 동안 사용한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의 합계액, 중고자동차 구입금액의 10%는 일반사용금액에 포함됨(중고자동차 판매 사업장이 전통시장내에 있는 경우 전통시장 사용분에 포함)
- ※ 중고자동차 구입금액의 10%가 공제대상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거래증빙을 첨부하여 홈택스(「홈택스>상담/제보>현금영수증 미발급>미발급신고하기」) 또는 세무서(현금영수증미발급 신고서 제출)에 신청



- 본 증명서류는 『소득세법』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·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.
-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.

2020년 귀속 소득·세액공제증명서류: 집계(월별,사용처별)내역 [현금영수증]

(조회기간 : 2020년 01 ~ 12월)

■ 사용자 인적사항

성 명	주 민 등 록 번 호
권영철	431228-*****

■ 현금영수증 사용금액 집계

구분	일반	전통시장	대중교통	도서공연등	합계금액
2020년 합계	25,200	0	0	0	25,200
3월분	1,500	0	0	0	1,500
4~7월분	9,100	0	0	0	9,100
그외 (1~2월,8~12월분)	14,600	0	0	0	14,600

■ 현금영수증 사용내역 (단위:원)

			02월	03월	04월	
구분	종류	05월	06월	07월	08월	공제대상금액
		09월	10월	11월	12월	
		1,500	3,000	1,500	0	
현금영수증	일반거래	3,000	1,500	4,600	1,500	25,200
		3,400	0	3,700	1,500	

- 1. 공제대상 : 근로제공 기간 동안 사용한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의 합계액, 중고자동차 구입금액의 10%는 일반사용금액에 포함됨(중고자동차 판매 사업장이 전통시장내에 있는 경우 전통시장 사용분에 포함)
- ※ 중고자동차 구입금액의 10%가 공제대상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거래증빙을 첨부하여 홈택스(「홈택스>상담/제보>현금영수증 미발급>미발급신고하기」) 또는 세무서(현금영수증미발급 신고서 제출)에 신청



- 본 증명서류는 『소득세법』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·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.
-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.

2020년 귀속 소득·세액공제증명서류: 집계(월별,사용처별)내역 [현금영수증]

(조회기간 : 2020년 01 ~ 12월)

■ 사용자 인적사항

성 명	주 민 등 록 번 호
한재덕	541211-*****

■ 현금영수증 사용금액 집계

구분	일반	전통시장	대중교통	도서공연등	합계금액
2020년 합계	23,500	0	0	0	23,500
3월분	0	0	0	0	0
4~7월분	0	0	0	0	0
그외 (1~2월,8~12월분)	23,500	0	0	0	23,500

■ 현금영수증 사용내역 (단위:원)

구분	종류	01월	02월	03월	04월	
		05월	06월	07월	08월	공제대상금액
		09월	10월	11월	12월	
현금영수증	일반거래	0	0	0	0	23,500
		0	0	0	0	
		0	23,500	0	0	

- 1. 공제대상 : 근로제공 기간 동안 사용한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의 합계액, 중고자동차 구입금액의 10%는 일반사용금액에 포함됨(중고자동차 판매 사업장이 전통시장내에 있는 경우 전통시장 사용분에 포함)
- ※ 중고자동차 구입금액의 10%가 공제대상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거래증빙을 첨부하여 홈택스(「홈택스>상담/제보>현금영수증 미발급>미발급신고하기」) 또는 세무서(현금영수증미발급 신고서 제출)에 신청



- 본 증명서류는 『소득세법』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서류로 소득·세액공제 충족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.
- 본 증명서류에서 조회되지 않는 내역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.